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9건의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가 등〉

- | | |
|------------------------------|------------------------------|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1호)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8호) |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2호)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9호) |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5호)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1호) |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6호)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2호) |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27호) | |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10
1.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가 등	10
2. 지방채 발행 특례	24

I.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4조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2조의2 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4조 등).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의2 등).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3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의2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4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가 등

9건의 개정안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 ----- ----- ----- ----- ----- ----- ~~통합특별~~ <u>시·광역시</u> -- ~~특별자치시·도~~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자치구의 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③ ----- ----- ----- ----- -----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⑤ (생략)	-----<u>통합특별시장</u> <u>· 광역시장</u>-----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 -----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 ----- -----.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 ----- ----- -----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 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 · 부지사를 말한다),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된다.

④ · ⑤ (생략)

통합특별
시장 · 광역시장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통합특별시 · 광역시-----

④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 <u>통합특별시·광역시</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통</u> <u>합특별시장·광역시</u> -----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생략) ② 특별시· <u>광역시</u>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u>통합특별시·광역시</u> ----- ----- ----- ----- ----- -----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 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 양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 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 ----- ----- ----- ----- ----- ----- -----.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
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조정교부
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
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

1. -----통합특별시
세·광역시세-----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
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u>특별시장 및 광역시장</u>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1. 2. (생략) ③ <u>특별시장 및 광역시장</u>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② <u>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u>-----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u>----- ----- ----- -----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u>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u>특별시장·광역시장</u>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u>-----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략)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u>광역시</u>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u> 장-----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 <u>광역시</u> 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 ----- ----- -----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u> 장-----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u>광역시</u>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u>특별시·광역시</u>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③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u> 장-----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 ----- -----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제40조(양여) ① ----- -----. 1. -----<u>통합특별시·광역시</u>----- -----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u>통합특별시·광역</u>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⑦ (생략)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 ② (생략)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u>광역시장</u>·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u>시</u>-----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공동계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	제29조(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 상대방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략) 제31조의2(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u>통합특별시·광역시</u>-----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통합특별시장·광역시</u> <u>장</u>-----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	제19조(지방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통합특별시, 광역시</u>----- ----- ----- ----- -----<u>통합특별시, 광역시</u>-----

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② (생략)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사업 조정) ①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
· 시-----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설립 등) ① -----

-----, 통합특별시장, 광
역시장-----

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 통합특별시장·광 역시장-----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고 함)로 통합되었음.

통합특별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었음¹⁾.

이때,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타법에서 기존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 3. 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법령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²⁾.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형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논의로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도를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³⁾.

구체적으로, 동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 특별자치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체인 시·군을 두고 있는 등 특별자치도별 행정체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일률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3) 국회사무처 법제실,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법제 시 고려 사항」, 『법제기준연구』 제6호, 2026. 6. 30.

이에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종류에 통합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법률별 정비대상 조문>

제명	내용
지방재정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상 지방채 발행, 보조금 교부·신청 및 조정교부금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를 추가
지방회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변경에 관한 보고체계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지방기금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성과분석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공유재산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사무 위임, 일반재산의 양여 등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지방보조금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비 기준보조율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지방계약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계약 및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현행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현행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설치·경영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행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 별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
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 및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지방채 발행 특례(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에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2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 18. (생략) <u><신설></u>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u>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제11조

4)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의2 각 호5)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을 제한하고 있음.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5)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 3. (생략)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관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 대상〉

발행 주체	발행 대상
지자체장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총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총당
	지방채의 차환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총당
그 외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따른 법률에 따라 발행 가능

개정안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동 법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⁶⁾ 통합특별시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

6)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맞춰 해당 법률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법적 정합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⁷⁾,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⁸⁾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 및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중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37